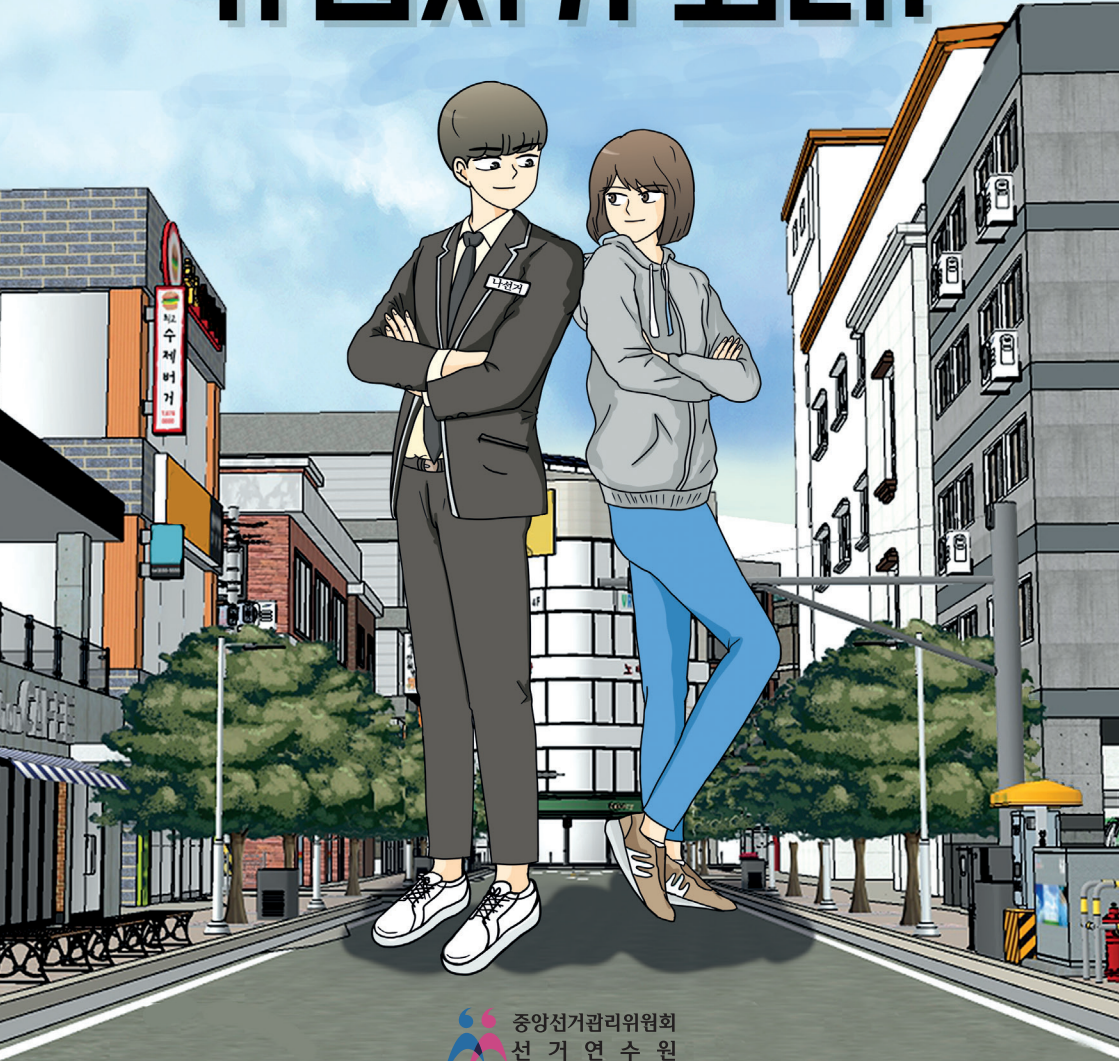


2021. 4. 7. (수) 재·보궐선거


청소년용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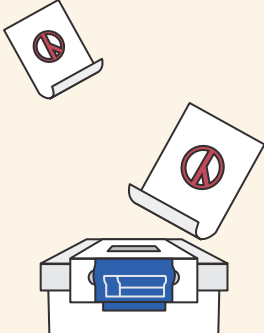


2021년 재·보궐 선거




선거일 투표

2021. 4. 7.(수)
오전 6:00 ~ 오후 8:00



사전투표



2021. 4. 2.(금) ~ 4. 3.(토)
오전 6:00 ~ 오후 6:00



선거권 연령

2003년 4월 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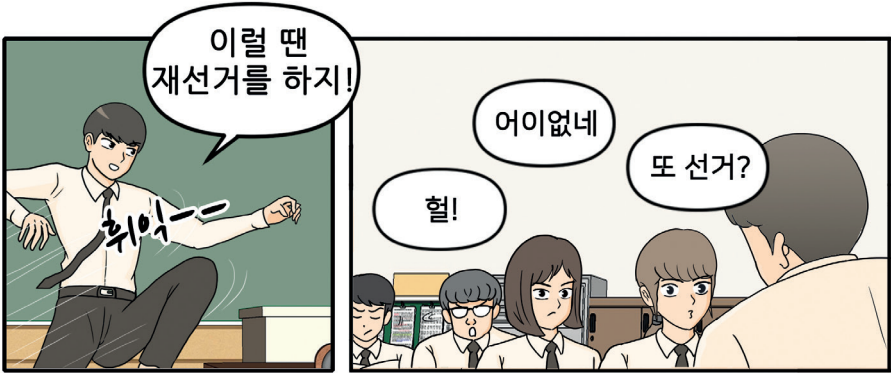




제1화



6개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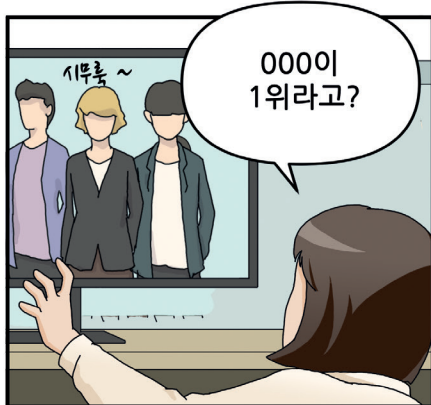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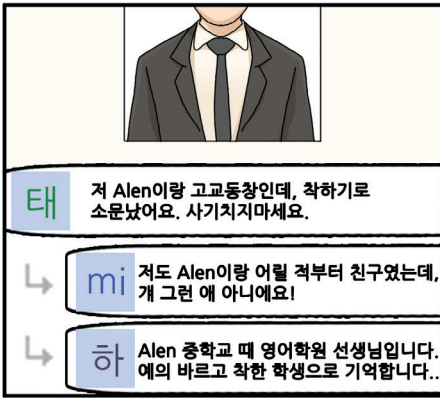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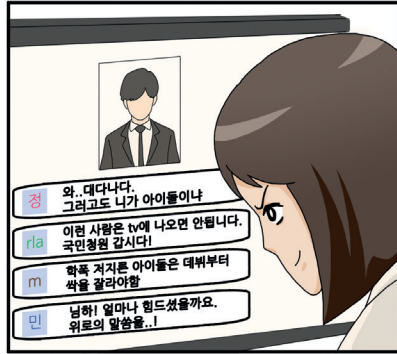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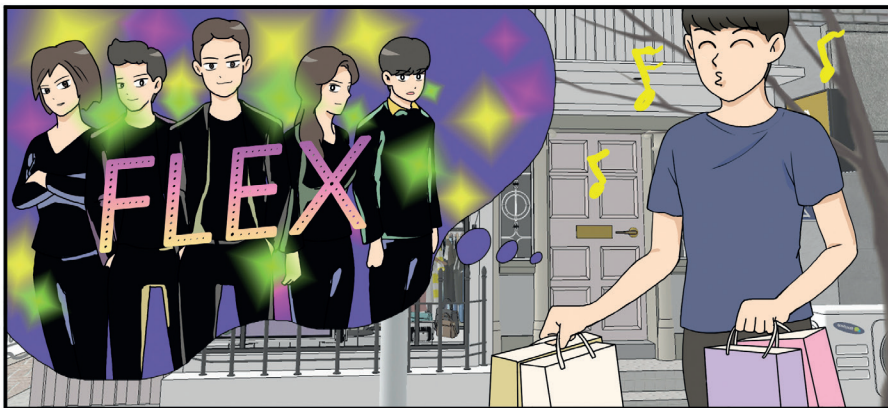


나만 아는 멋진 후보자가 있나요?
SNS로 친구들에게 추천할 수 있어요!





깨끗한 선거,
청소년이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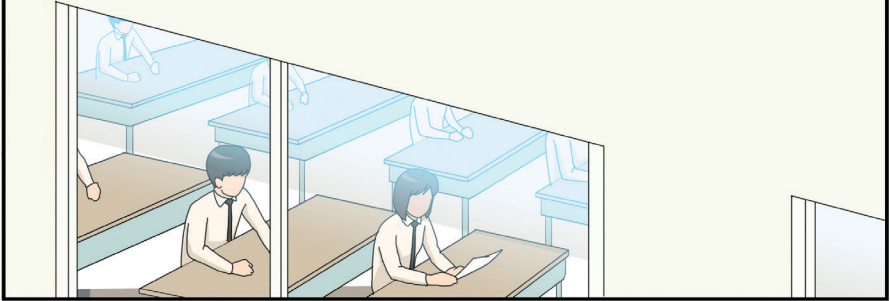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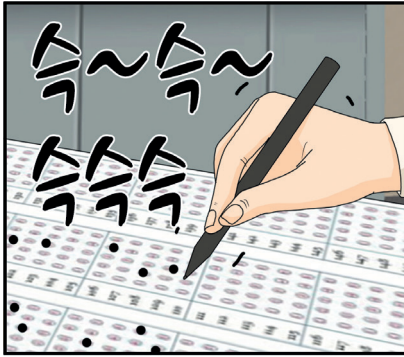


다양한 선거정보를 확인하고
진정한 명품 후보자를 선택해요.



000 고등학교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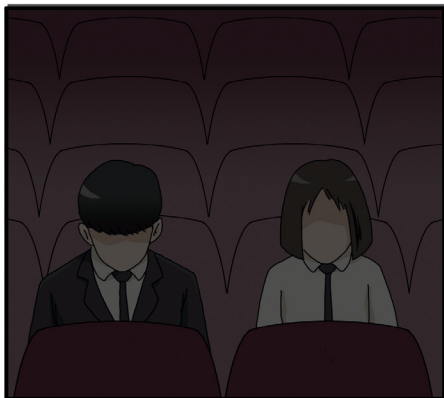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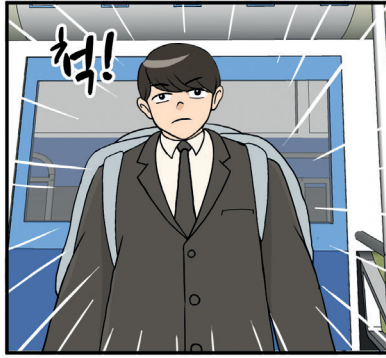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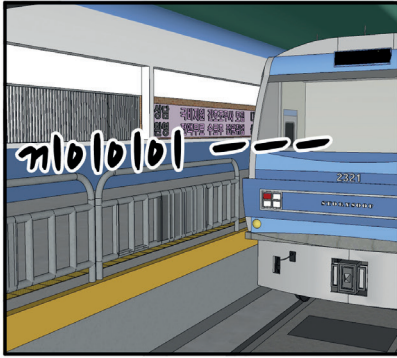


한 번 찍으면 바꿀 수 없어요!
투표할 땐 집중 또 집중!!



제6화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으세요.



더 알아보기

재·보궐선거란?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도지사 등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실시하는 선거예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지요.

재·보궐선거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나요?

재선거

-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는 경우
-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된 경우

보궐선거

- 임기 개시 후에 당선인의 사퇴·사망 등의 사유로 빈자리가 발생한 경우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각각 규정하는 이유는?

- **재선거**는 본인이 출마한 선거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예요.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으로 반환·보전해준 기탁금·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요.
- **보궐선거**는 본인이 출마한 선거와 무관하게 재직 중에 사퇴·사망 등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예요. 기탁금·선거비용 반환 등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재·보궐선거는 언제 실시하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요.

재·보궐선거는 어느 지역에서 실시하나요?

내가 사는 동네가 포함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재·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검색해보세요.



선거운동이란?

“기호 0번! 저에게 투표해주세요!” 선거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후보자들이 외치곤 하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선거운동’인데요. 선거운동에는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돼요.

일반적인 선거운동 방법

- 선거사무소 설치
- 어깨띠 등 소품 이용
- 거리 유세
- 전화·문자·e-mail 전송
- 현수막
- 미디어 광고
- 명함 배부
- 선거공보·선거벽보
- TV 토론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선거운동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가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다만,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2021. 4. 7.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1. 3. 25. ~ 4. 6. 이에요. 총 13일 동안은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공개된 장소에서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
- 전화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
- 다수가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다.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 문자메시지로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에 공유한다.
-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다.
-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올린다.



하면 안 되는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거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서 금지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상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과 같은 주변인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 특정 지역이나 지역 사람에 대한 악성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 기숙사, 친구 집 등을 방문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상징물을 착용하는 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교사, 공무원 등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하면? 1390으로 전화!

내가 하고 싶은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궁금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거나 겪었을 때도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양한 선거정보를 알아봐요!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겠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해보세요.

TV,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후보자토론회 시청하기

선거기간에 건물 담장 등에 게시된 선거벽보 살펴보기

집집마다 우편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 읽어보기

사이버선거역사관 (<http://museum.nec.go.kr>)에서 가상 선거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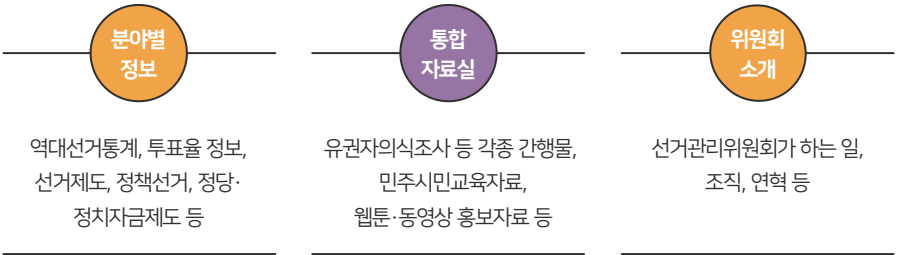


후보자의 정책도 꼼꼼하게 비교해요!

-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와 맞는 공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 후보자별로 비슷한 공약의 차이점 찾아보기
- 관심 공약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기
- 토론 후 공약에 대한 순위 매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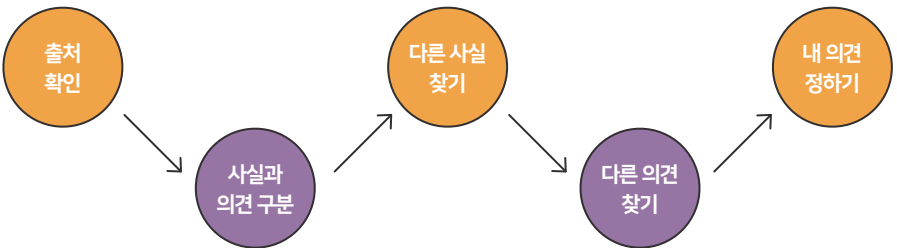
선거 요모조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다양한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도 팩트 체커! 선거·정치 콘텐츠 비판적으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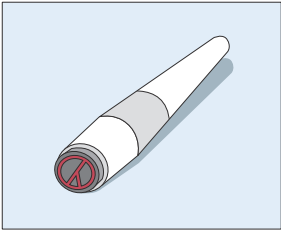
수많은 선거·정치 콘텐츠 속에서 가짜뉴스를 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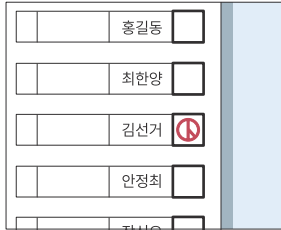


정확한 기표로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행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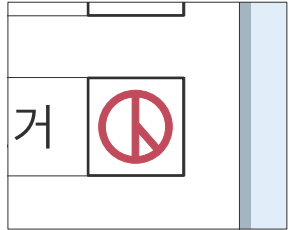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도 내 의사가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투표를 했어도 올바르게 찍지 않거나 낙서를 하면 그 표는 무효 처리돼요. 따라서 정확한 기표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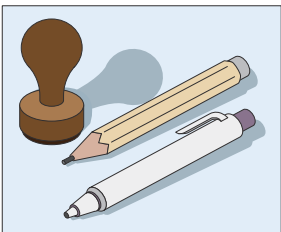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전용 도장으로 찍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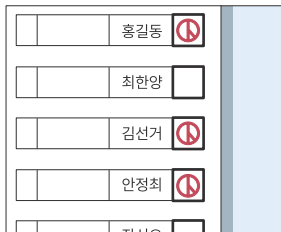
투표용지마다 투표도장은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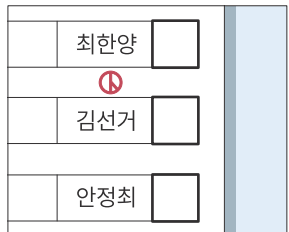
투표도장을 기표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펜이나 다른 도장으로 표시하면 무효가 됩니다.



여러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도장을 어느 기표칸에도 찍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을 수 있어요.

생애 처음으로 유권자가 되는 여러분! 투표 참여의 뿌듯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죠? 그렇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한 투표인증 사진을 찍어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단, 투표소 및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쉿! 비밀선거의 원칙 아시죠?

투표를 하고나서 몇 번 후보자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니까요.

단, TV·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가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투표소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하는 건 가능하니 이럴 땐 자연스럽게 응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싶다면?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 참여 권유하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밖에서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



-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여 투표 참여 권유하기
- 집집마다 방문해서 투표 독려하기



투표하기 전에 챙길 것은?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검색
-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이용
-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 확인

*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는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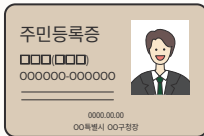
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을 챙겨요!

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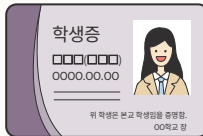
신분증은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것으로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포함되어야 해요.

- 주민등록증, 학생증(사립학교 학생증 포함),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병적기록부, 생활기록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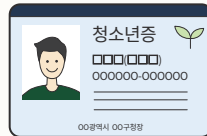
주민등록증



학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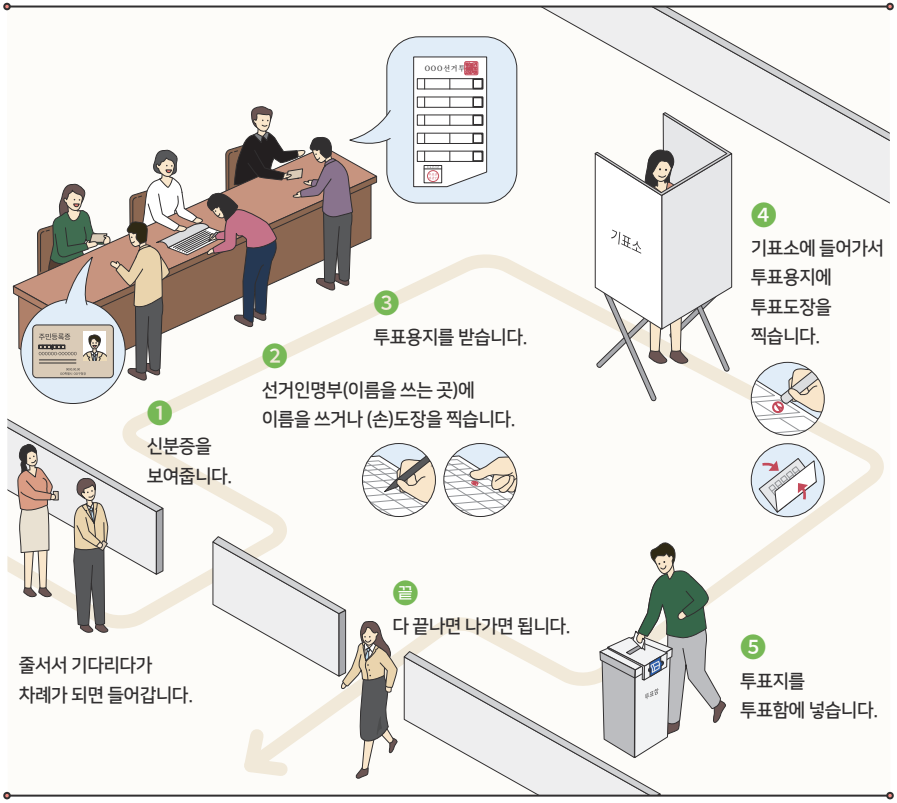
청소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학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 절차가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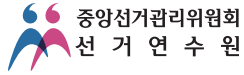


새내기유권자 여러분!
세상이 내 목소리를 듣길 원하나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요?



**여러분의 꿈을
투표가 들어DREAM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 통합자료실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충청선거관리위원회
선 거 연 수 원